

특정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공사현장 장마철 피해 예방 특정감사 -

2020. 8.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, 명)

일련 번호	소 관	건 명	처 분 요 구		
			처분종류	재 정 상 조치금액	신 분 상 조치인원
1	예천군 \$\$\$\$과	예천군 00 0000 현대화사업 하천부지 무단 점 용	시정		훈계3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연번	제 목	관 련 자			문 책	비 고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
1	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 하천부지 무단 점용	예천군 \$\$\$\$과			훈계	
					훈계	
					훈계	

3. 처분요구일람표

- 1) 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 하천부지 무단 점용 (시정) 2

일련번호	1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3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
수감부서(처리부서)	예천군 \$\$\$\$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

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

제 목 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 하천부지 무단 점용
소 관 청 예천군
관 계 부 서 \$\$\$\$과
내 용

예천군 \$\$\$\$과에서는 2019. 7. 3. ■■■■■■■■(주) %%%와 공사계약(8,957백만원)을 맺고 2019. 7.10. 착공하여 2021. 7. 8. 준공예정으로 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

공 사 현 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사업기간	사 업 비(백만원)			도급자	비고
			계	도급액	관급액		
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	정수장 개량 6,000톤/일 관로 L=18.4km	2019.7.10. ~ 2021.7.8.	16,025	8,957	7,068	■■■■■■■(주) %%%	

「지방재정법」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,

「하천법」 제3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, 하천시설의 점용, 토지의 굴착, 성토, 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

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및 굴착 행위를 하려면 점용의 목적 및 면적, 점용허가 기간 등을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.

그런데도, 예천군 \$\$\$\$과에서는 예천군 00 000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2019.10.24. &&&&과로부터 한천 하천 구역내 000 000 000-0번지 7,224㎡(터파기 등 일시점용 6,992㎡, 관로매설 영구점용 232㎡)를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, 홍수위 보다 낮은 고수부지 6,366㎡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래 [그림1]과 같이 정수장 구조물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감사일 현재 까지 임의 사용하고 있다.

그 결과, 집중호우시 한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장소에 야적한 건설공사용 자재 유실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업추진에 걱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

[그림1]



조치할 사항 예천군수는

- ① 하천구역내 임의 적재한 건설자재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,
- ② 관련자는 「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